

의안번호	2203223
의 퇴 인	김미애의원
회 답 일	2024. 9. 25.
추계번호	24C3192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의2(후견인 선임 지원)	보장원(아동권리보장원)의 장은 다음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을 할 수 있고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·법인·단체에 대하여 법률상담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-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- 제19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에 관한 사항 -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0조의2(후견인 선임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후견인 선임 지원(안 제20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8조¹⁾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

1) 「아동복지법」 제18조(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등) 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,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.

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(이하 "학교의 장"이라 한다)은 제1항의 사유

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, 법 제19조²⁾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에 관한 사항,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, 그에 따르는 국가재정소요를 예상할 수 있음

- 다만, 안 제20조의2제3항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, 구체적인 법률상담의 내용 및 절차,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바 현시점에서는 새로이 발생하는 업무와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 보장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개정안에서 법률상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친권상실, 미성년후견인 선임 외 성변경 등 가사소송 전반에 걸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,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지원(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행) 결과 현황 자료는 다음과 같음³⁾

에 해당하는 경우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, 아동을 상담·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.

- 2) 제19조(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) 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아동복지시설의 장,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④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「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한다.

- 3) 아래의 자료는 소송지원 결과만을 나열하였으나,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에게 유선 문의한 결과 소송의 개정안에 규정된 법률상담 내용 대부분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담당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음

[표]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지원 결과 현황

(2024년 8월 기준, 단위: 건)

구분	지원 사례	법률지원 사례 구분				소송 및 심판 청구 결과					
		친권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	미성년 후견인 선임	성변경	기타	인용			자진 취소	기각	진행중
						계	당해 인용	이월 인용			
계	236	149	59	22	6	206	64	142	11	14	5
2023	59	36	14	9	—	47	21	26	6	2	4
2022	44	28	8	6	2*	39	12	27	1	3	1
2021	48	35	7	5	1*	44	11	33	—	4	—
2020	36	23	11	2	—	32	9	23	—	4	—
2019	20	10	8	—	2*	18	4	14	2	—	—
2018	17	6	10	—	1*	17	3	14	—	—	—
2017	6	5	1	—	—	5	1	4	1	—	—
2016	6	6	—	—	—	4	3	1	1	1	—

* 미성년 후견인 변경

자료: 보건복지부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